

[별지 제4호 서식]

협 약 서

- 실증시험명 :
- 협약기간 :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
- 협약당사자
 (협약주관자) : 국립축산과학원장
 (협약상대자) : ○○○○○○

상기 현장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(협약주관자)와 (협약상대자)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표) 본 실증시험의 목표는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,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용화를 촉진하는데 있다.

제2조(재료의 공급) ① (협약주관자)는 (협약상대자)에게 실증시험의 대상 기술과 관련된 재료를 공급한다.

② (협약주관자)가 (협약상대자)에게 제공하는 재료의 종류는 ○○○, ○○○,○○○,○○○,○○○ 등이다.

③ (협약상대자)는 (협약주관자)에게 실증시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며, 시험축을 실증시험에 사용하게 한다.

④ (협약상대자)는 (협약주관자)에게 제공 및 사용을 허용하는 대상은 ○○○,○○○,○○○,○○○,○○○ 등이다.

제3조(시험 데이터의 제공) (협약상대자)는 (협약주관자)에게 실증시험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조(권리이양) (협약주관자)가 실증시험 수행을 위해 (협약상대자)에게 제공한 재료는 협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(협약상대자)의 소유로 한다.

제5조(관리 및 위험부담) ① 실증시험 수행 중 및 실증시험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(협약상대자)에 귀속한다.

② 실증시험을 위한 시험축의 관리는 (협약상대자)가 전담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) ① (협약주관자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(협약주관자)가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(협약상대자)로부터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

② (협약상대자)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(협약주관자)에게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(협약주관자)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(협약상대자)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약) ① (협약주관자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1. (협약상대자)가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목표달성 및 실증시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

2. 부도·법정관리·폐업 등의 사유로 (협약상대자)가 실증시험을 수행할 수 없을 때

3. (협약상대자)가 실증시험의 수행이 지연되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
4. (협약상대자)가 실증시험을 위해 (협약주관자)가 제공한 재료를 실증시험과 관련 없이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(협약상대자)는 실제 실증연구에 투입된 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(협약상대자)는 투입재료비의 전부를 (협약주관자)가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.

③ (협약상대자)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제재조치) ① (협약상대자)는 실증시험 수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(협약주관자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(협약상대자)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실증시험 데이터의 은폐 및 조작 : 3년
2. 정당한 사유 없이 실증시험 수행을 포기한 경우 : 5년
3. 실증시험을 위해 (협약주관자)가 제공한 자료의 고의적 훼손 : 5년
4. 그 밖에 운영규정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: 3년

제9조(비밀준수) ① (협약주관자)와 (협약상대자)는 실증시험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어진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 등 일체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, 정보 및 자료의 대외 공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(협약주관자)와 (협약상대자)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.

제10조(신의성실 및 상호협조) (협약주관자)는 실증시험의 독려, 진행상황 점검,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실증시험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며, (협약주관자)와 (협약상대자)는 실증시험 기간 동안 수시로 실증시험 내용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1조(해석) 본 협약서의 해석 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(협약주관자)의 해석에 의한다.

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(협약주관자)와 (협약상대자)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○. ○. ○.

(협약주관자) : 국립축산과학원장 ○ ○ ○ (인)
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팔쥐로 1500

(협약상대자) : 농장대표 ○ ○ ○ (인)
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